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102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102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00350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20 선고 2011가합135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피고, 피상고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식회사 대우건설

판결 선고 2017. 9. 2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나20035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제1주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제1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한다)상 오염원인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2주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재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고, 그 범위에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사건 재정결정에서 정한 위 의무를 함께 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른 협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제2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환경분쟁조정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정결정의 효력,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예비적 청구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정결정에 따라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재정결정에서 부과한 의무를 이행한 점, 이 사건 2차 확장공사에 따른 이 사건 방음벽 설치에 이 사건 재정결정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 주장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기준상 소음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소음방지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음벽을 설치한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조재연